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3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8. 5. 9  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사유

2008. 1. 1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(행정안전부)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신설(안 제3조의2)
- 나. 준용규정 일부변경(안 제5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, 「공무원여비규정」,  
“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(행정안전부)”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▷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의거 생략

**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**

**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
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1. 영 제8조의2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.

제5조제3호 중 “중앙인사위원회와”를 “행정안전부장관과”로 한다.

제5조제6호 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”으로, “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”를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 <p>제5조(준용규정) (생략)</p> <p>1.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“「국고금 관 리법」 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(이하 “정부구매카드”라 한다)” 와 같은 조 제1 항 단서 및 제4항·제16 조 중 “정부구매 카드”는 “여비전용 카드”로 본다.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중앙인사위 원 회와 협의하여” 는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4. ~ 5. (생 략)</p> <p>6. 영 제29조제1항 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” , 같 은 조 제2항 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 처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같은 조 제4 항 중 “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 원회와 협의하여” 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7. (생 략)</p>	<p>제3조의2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공무원 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 비는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한다.</p> <p>제5조(준용규정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영 제8조의2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 는다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“행정 안전부 장관과 -----.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"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----- , ----- "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 정 부장관 ----- , -----"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 부 장관과 -----". -----.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

**[별표 1]**

(단위 : 원)

구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(버스)운임	숙박비 (1야당)
제1호	1등급	1등급	정액	정액	46,000 (구청장은 실비로 지급)
제2호	2등급	2등급	정액	정액	30,000

- 비고 : 1.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“공무원여비규정”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2. 자동차(버스)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,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3.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,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.
4.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.